

참여연대 · YMCA ·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및 연락 : 경실련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15-5 정동빌딩 별관5층 전화 771-0376 전송 02-757-7383~4 천리안 ccej 나무누리 ccej1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합의한 방안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각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결정한 방안에 대해 각종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회와 약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우리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국민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 이 합의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들의 행동과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자 하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 5개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차례 걸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은 한번도 빠짐이 없이 참석해 왔다. 특히, 의협은 5월 10일 약사회와 같이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준비한 의약분업 방안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양자가 만든 합의안으로 할 것을 전국민 앞에서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시민대책위'의 의약분업 방안을 기초로 새로운 정부안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6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 역시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였고, 한번도 빠지는 일이 없이 출석하였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매 회의마다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때마다 합의를 도출하고 회의록을 남기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지난 9월 17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최종안은 그 간에 있었던 매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대표들은 회의의 벽두에 정부 대표가 최종안 초고의 낭독을 마치자마자,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고는 그대로 퇴장해 버렸다. 초안의 발표 이후에 내용 토의가 있었으나, 그들은 이 토론에는 참여하지도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퇴장하기 위해 회의장에 나왔던' 것이다. 우리는 의협과 병협의 이 행동이 향후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것을 의심하였던 바, 불행히도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의약분업처럼 많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서로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주체들은 주장과

양보를 거듭하면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 사회가 토론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의협과 병협에 대해 묻고자 한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시민단체가 약속을 어긴 부분이 무엇인가?

최근의 신문광고에서 의협은 “합의된 핵심사항”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임의조제 금지조항의 명문화>이다. 병협은 또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학병원장회의, 중소병원협의회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병원의 임의분업과 주사제의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임의조제’란 ① 약사가 의사의 처방이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② 처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 삭제 또는 교체하는 행위, ③ 처방을 임의로 반복하여 조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합의된 바 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성안하여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에 그 취지를 살린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말하는 소위 “임의조제”의 금지란 이와는 전혀 다른 얘기로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모두를 의사의 통제 아래 두어야겠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는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의약품을 줄이려고 했던 의협의 치열한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의협이 말하는 소위 “임의조제”의 금지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간단한 감기, 배탈조차도 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반드시 들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가 엄청난 폭으로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의협과 병협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임의조제의 금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약분업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병원의 임의분업과 주사제를 예외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도 모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도록 하면서 처방료는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광고에서는 “의약분업 방안은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의협과 병협은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엄청나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방식으로 의약분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의약품 오남용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병원의 강제분업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미 40%나 예외가 된 주사제의 예외 폭을 더 줄이자는 주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협과 병협은 결국, 약국에서의 오남용은 줄이되, 병원에서 의 오남용(주사제 등)은 늘려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병협은 ‘병원의 임의분업’을 다시 거론하고 나왔다. 이는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수없이 검토한 사항이다. 병원이 외래조제실을 가지고 있는

한 처방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의원에서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1차 기관에서 병원급으로 환자 집중이 가중되어 그렇지 않아도 왜곡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기형적으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 방안은 약사들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일찍부터 병원의 강제분업을 결정하였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제 새삼스럽게 병협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온다면, 의약분업의 실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의사회와 약사회의 반대로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재검토할 가치가 없다.

결국, 의협과 병협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안목으로만 보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파행적인 의보약가체계를 통해 막대한 음성적 수입을 향유해 온 의료계로서 '국민불편과 의료비 상승'이란 명분도 결국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한낱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중요한 당사자인 의사들이 의약분업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채, 이기주의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협과 병협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남용이 방지되지 않는 의약분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되묻고자 한다. 의약분업은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 너무나 광범위한 의약품의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의약분업을 방해하고 있는 책동 아야말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차마 할 수 있는 주장인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의약분업제도를 반드시 실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부분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하여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의협과 병협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만 훼손할 것이 분명한 모든 의약분업 반대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의 편에서 서서 진정한 국민보건의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1. 의약분업은 의약분업 실행위원회가 합의하고 결정한 그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국회는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단 시일 내에 심의하여 가결해야 한다.
3. 정부는 의약분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4. 의협과 병협은 의약분업 반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즉시 중단하고, 의약분업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199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YMCA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